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88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6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5년 5월 25일 아이수루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725호)과 2025년 5월 26일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817호)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,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고,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지만,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·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.
- 시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년 중 일부 날짜를 ‘스포츠데이’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시장이 지정한 ‘스포츠데이’에 시민이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8조의3).

나. 스포츠데이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스포츠데이에 시
립체육시설을 이용·사용하는 자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
조의2).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8조의3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3(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) 시장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교류 사업
2.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
3.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
4.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
5. 그 밖에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2조의2(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)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가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3(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) 시장은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 <u>1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체육 교류 사업</u> <u>2.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국제교류 사업</u> <u>3.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사업</u> <u>4.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</u> <u>5. 그 밖에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<u><신 설></u>	<u>제22조의2(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) ① 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에 「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가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</u>